

[노인의료복지시설]

#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서

|      |                   |
|------|-------------------|
| 계약기간 | 2025. . .~202 . . |
| 수혜자  |                   |

사회복지법인 영광효사랑노인복지센터  
난원(蘭苑)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서비스 중 입소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당사자                   |        |                                                                                                               |               |              |
|-------------------------|--------|---------------------------------------------------------------------------------------------------------------|---------------|--------------|
| 이용자<br>(갑)              | 성 명    | (서명/인)                                                                                                        | 등 급<br>(인증번호) | 등급<br>L      |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 주 소    |                                                                                                               |               |              |
|                         | 기 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50%경감대상자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              |
| 제공자<br>(을)              | 시설명    | 영광효사랑노인복지센터                                                                                                   | 시설종류          | 노인요양시설       |
|                         | 시설장 성명 | 고 윤 순 (인)                                                                                                     | 연락처           | 061)350-3300 |
|                         | 주 소    | 전남 영광군 법성면 연우로 42-6번지(숲쟁이공원 맞은 편)                                                                             |               |              |
| 대리인<br>또는<br>보호자<br>(병) | 성 명    | (서명/인)                                                                                                        | 관 계           | ‘갑’의 ( )     |
|                         | 생년월일   |                                                                                                               | 연락처           | 자택)<br>이동전화) |
|                         | 주 소    |                                                                                                               |               |              |

**제1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 급식, 의료, 재활, 여가,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인전문요양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이용자, 보호자, 시설 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서비스내용]** ‘을’은 ‘갑’에게 노인전문요양서비스에 해당하는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 일상생활지원, 영양관리, 취미, 오락, 재활,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비스

스를 제공한다.

### 제3조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2025년 월 일부터 ~ 202년 월 일 까지로 한다.
-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제4조 [이용료 납부]

- ① ‘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2025년 월15일 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15일 납부하기로 한다.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현금)또는 카드결제 로 한다.
- ④ ‘갑’ 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 시설급여 (1일)

| 구분               | 분 류      | 금 액             | 비 고                         |
|------------------|----------|-----------------|-----------------------------|
| 요<br>양<br>급<br>여 | 장기요양 1등급 | 90,450          | 4등급~5등급(치매등급)은<br>3등급 수가 준용 |
|                  | 장기요양 2등급 | 83,910          |                             |
|                  | 장기요양 3등급 | 79,240          |                             |
| 비<br>급<br>여      | 상급침실 이용료 |                 |                             |
|                  | 식재료비(1식) | 3,000원×3식=9,000 |                             |
|                  | 간식비(1회)  | 500원×1회=500     |                             |
|                  | 이/미용료 등  |                 |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안내 >

| 구분                                                     | 시설급여      |
|--------------------------------------------------------|-----------|
| 일반                                                     | 20%       |
| 기초수급권자                                                 | 0%        |
| 기타 의료수급권자<br>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br>자격전환자(회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12%<br>8% |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br>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세부내역 (30일 기준)

| 구 분          |               | 금액(원)     | 내 역            |
|--------------|---------------|-----------|----------------|
| 본인부담금 납부총액   |               | 475,440   |                |
| 요양보험<br>부담비용 | 소 계           | 2,377,200 |                |
|              | 요양급여비용(80 %)  | 1,901,760 | 79,240×30일×80% |
| 개인<br>부담비용   | 소 계           | 760,440   |                |
|              | 요양급여비용( 20 %) | 475,440   | 79,240×30일×20% |
|              | 식사재료비/간식비     | 285,000   | 9.500×30일      |
|              | 상급침실 이용료      |           |                |
|              |               |           |                |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안내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5조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6조 [신원 인수인에 관한 사항]**

① 신원인수방법은 ‘갑’의 보호자인 ‘병’이 ‘을’에게 신원을 인수하도록 한다. 단, ‘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갑’의 현재 거주지에서 입소지원 한다.

② ‘을’의 ‘갑’에 대한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는 신원 인수는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 1명, 운전 및 수발지원 1명에 의해 안전한 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때 ‘병’은 ‘갑’에 대한 병력 및 건강상태에 관련한 정보를 ‘을’에게 제공한다.

**제7조 [계약해지 요건]**

**① ‘갑’의 해지**

1. ‘갑’ 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3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

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제8조 [퇴소]

- ① ‘을’은 제6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 제9조 [개인물품]

- ① ‘갑’은 시설이용 시 ‘을’이 지정한 개인물품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한다.
- ② ‘갑’과 ‘병’은 ‘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물품이 위화감조성 또는 타 이용자의 시설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 시설의 판단 하에 물품을 철수토록 할 수 있다.

## 제10조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단 ‘갑’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 ② 면회객이 음주·폭언·폭행 등 위험 소지가 있는 경우 시설에서는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갑’의 외출 및 외박시 동행자가 보호자 또는 가족이 아닐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을’은 동행자의 연락처 및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 ④ ‘갑’의 외출 및 면회는 ‘갑’의 건강을 고려하여 ‘을’이 결정한다.

- ⑤ ‘갑’은 외출·외박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⑥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 ⑦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서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하며, 외출·외박 중에 발생한 ‘갑’의 변화 및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있다.

#### 제11조 [시설관리 및 사용상 주의사항]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 ③ ‘갑’은 ‘을’의 방화관리 책임자 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 ④ ‘갑’은 요양보호사의 안내에 따라 실내에서의 낙상 또는 미끄럼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⑤ ‘갑’은 화재 위험이 있는 개인용 전기제품 및 기타 물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식당이 외의 장소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수 없다.(전기다리미, 전기담요, 전기난로, 전기 찜질팩, 휴대용 가스레인지, 모기향 등)
- ⑥ ‘갑’은 타인의 건강을 위하여 실내에서는 금연·금주한다.
- ⑦ ‘갑’은 시설의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상해의 위험이 있는 물품·수리가 요구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알린다.
- ⑧ ‘갑’은 도난·분실·파손의 우려가 있는 개인 보관용 현금, 고가의 물품은 소지할 수 없다.

#### 제12조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が必要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다.

-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 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⑥ ‘을’은 ‘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 제13조 [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제14조 [위급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 제15조 [임종 및 장례]

####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 제16조 [식사 및 간식]

- ① ‘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② ‘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요양실의 배정]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 제18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으로 한다.
- ④ ‘갑’은 ‘을’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9조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20조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 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제 19조 전항에도 불구하고 배상에 대한 금액은 법적 의무 가입 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전문인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다.

## 제21조 [신체활동 일시제한 및 사후조치]

### ① 제한사유

1. ‘갑’이 치매 등의 사유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어 공격적인 행위, 상대방을 위해하거나 스스로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때
2. ‘갑’이 갑작스러운 공격행동, 흥기사용 등으로 직원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일시적인 신체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② 사후조치

1. ‘갑’의 신체활동의 제한은 반드시 간호(조무)사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얻은 후에 시행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우선 조치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갑’의 신체활동을 제한할 경우 담당자는 사유를 기록하고 간호(조무)사는 해당 어르신의 ‘병’에게 알려야 한다.
3. ‘갑’의 신체활동을 제한한 후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호전될 수 있도록 의료 및 전문가의 조언이나 상담,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병’과 상의하여야 한다.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갑’의 신체활동 일시제한에 대한 승낙은 서면(수혜자 신체제재 동의서) 으로 한다.

## 제22조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

202    년    월    일

- ☐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 ☐ ‘갑’과 ‘병’은 노인 인권 보호 지침을 ‘을’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을’ 시설장                      고   윤   순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서명/인)

‘병’ 대리인(보호자) (서명/인)